



건설관련 법률상담

곽동우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공사대금채권 중 노임부분의 압류금지와 계산방법

Q 건설업자인 A사는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30억원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은 15억원이다. 공사가 진행되어 A사의 공사대금채권이 4억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A사의 채권자인 B사는 A사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 후 당해 공사에서 A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인 C가 6억원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역시 A사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 경우 C와 D는 얼마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건설업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건설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거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압류

채권을 자신의 것으로 전적으로 가져와서 소위 독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업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근로자 노임부분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1항), “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은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시행령 제84조 제1항),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동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압류는 무효이고, 그런 무효인 압류를 전제로 하는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역시 실체법 상 무효이다(대법원 판례).

본 사례를 보면, A사의 남아 있는 공사대금채권이 4억원인데, 산출내역서의 노임은 15

억원이다. 이런 경우 위 4억원 전액이 노임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하여 4억원 전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남은 공사대금채권 4억원 중 근로자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인 공사계약서, 산출내역서, 기성고청구 및 지급서 등을 토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만약 A사의 남은 공사대금채권 4억원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총공사대금 중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노임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향이다.

본 사례를 그런 방법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총공사대금 30억원 중 노임 15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므로 위 4억원의 잔여 공사대금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2억원(= 4억 x 50%)으로 계산된다. 이를 적용하면 B사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4억원 중 노임에 상당하는 2억원에 대하여는 무효이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하여만 유효하다는 결론이 된다.

그렇다면 노임에 상당하는 2억원에 대하여는 C의 압류 및 전부명령도 무효인가? C의 압류도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 법원은 C는 바로 당해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노임을 받을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았다(청주지법 2005. 4. 21. 선고 2004나3339).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B는 2억원, C는 2억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위 청주지법 판결에 대하여 C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을 통과한 사례가 더 있었으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및 그 하급심), 공사대금 중 노임부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사대금에 대한 총노임의 비율에 의한 계산방식이 적용될 수 있겠다.

다만 대법원은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이 별도로 구분,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압류금지부분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노임부분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확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노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노임액이 얼마인지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다. 